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061521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강

담당변호사 김은진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18가합59144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4,265,000원 및 그중 별지3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손해발생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별지3 청구금액표 연번 4, 5, 11 내지 13, 15, 30, 31, 37 내지 39, 41, 45, 46, 54 기재와 같이 확장하고, 연번 9, 14, 16, 19, 21 내지 24, 26 내지 29, 44, 47, 50, 55 내지 57, 59, 61, 62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나.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주 내에 온라인 학습사이트 EBSi 홈페이지 알림방 최상단에 제1심 판결 별지2 공고문을 14일간 게시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185,444,000원 및 그중 별지5 표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침해일'란 기재 일자¹⁾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연번 9의 '2016. 10. 29.'은 '2016. 1. 29.'의 오키로 보이고, 연번 62에는 '2014. 7. 2.'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55,2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과 ②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명예회복조치로 EBSi 홈페이지 알림방 최상단에 제1심 판결 별지2 공고문을 14일간 게시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명예회복조치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손해배상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손해배상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²⁾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별지3은 이 판결의 별지3으로 교체하고, 별지5를 추가하며,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명예회복조치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과 별지1 표 중 연번 16, 21, 23 부분은 제외한다).

3.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마지막 행의 "한다" 뒤에 각주로 "선행판결은 대법원 2023. 8. 18.자 2023다237217 판결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2) 다만, 제1심 판결 별지1 표 중 연번 16, 21, 23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다투지 않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제1심 판결은 이 부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위자료 청구금액을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으로 감축하였고, 피고도 부대항소장 및 부대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의 경우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액보다 더 감액할 것을 구하고 있지 않다).



○ 제3쪽 마지막 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선행판결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① 피고가 발행한 선행 서적의 정가와 판매부수 및 매출이익, 선행 서적 전체에서 원고의 번역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 ② 번역저작물은 속성상 번역 대상 원문에 충실하여야 하고 그 의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는 통상의 저작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동일성을 유지할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③ 피고는 교육부 정책에 연계하여 공교육 정상화 내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특수한 공익적 목적으로 선행 서적을 기획, 발행한 것이었던 점, ④ 피고가 교사용 및 연구용 도서를 발간하여 얻은 수익은 거의 없거나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제5쪽 제9행과 제6쪽 제9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0행의 "2차적저작물"을 "2차적저작물(번역저작물)"로 고쳐 쓴다.

○ 제8쪽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번역저작물인 원고 번역문을 이 사건 서적, 동영상 및 자료에 인용·전재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이 사건 서적, 동영상 및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발행 또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번역문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또한,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적, 동영상 및 자료에 원고 번역문을 인용·전재하면서도 그 출처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인용·전재함에 있어 원고 번역문의 내용 일부를 임의로 수정, 생략하여 개변하거나, 그와 같이 임의로



개변된 번역문을 이 사건 서적, 동영상 및 자료에 게재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번역문에 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다(다만, 원고는 피고가 원고 번역문 중 일부의 제호를 변경하여 그 동일성유지권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번역문 중 제호의 경우에는 원고가 스스로 붙인 저작물의 제호가 아니라 원고 번역문의 대상이 된 사료 원전의 제목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고의 저작자로서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8쪽 제13~15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과실로 원고 번역문에 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으로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8쪽 제20~21행의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점"을 "원고도 피고 저작물별로 1,000,000원을 기본적인 청구금액으로 삼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6행의 "218,010,000원"을 "별지1 피고 저작물별 '합계'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 218,010,000원"으로 고쳐 쓰고, 제7행과 제10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모두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동영상과 자료의 이 사건 웹사이트 게시, 즉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그 침해기간에 비례하여, 그리고 이 사건 서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동영상과 자료의 이 사건 웹사이트 게시로 인한 피고의 공중송신권 침해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과 자료는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새롭게 제작, 게시되는 것으로서 경험칙상 그 다음연도가 되면 직전연도에 제작되었던 이 사건 동영상과 자료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침해의 정도가 침해기간에 그대로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³⁾

다음으로, 이 사건 동영상과 자료는 이 사건 서적과 그 내용이 대체로 중복되는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동영상과 자료를 별도로 판매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서적의 제작, 발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과 이 사건 동영상과 자료의 제작, 게시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연번 4, 5, 11 내지 13, 15, 30, 31, 37 내지 39, 41, 45, 46, 54 기재와 같이 위 각 피고 저작물별 무단전재 건수를 반영하여 위자료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각 피고 저작물별 위자료 금액이 무단전재 건수만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 번역문의 인용·전재의 구체적인 형태, 피고가 원고 번역문에 관한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확장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원고의 과실로 인한 과실상계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3)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의 2020. 3. 19.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2020. 6. 1. 임의로 제출한 '세계사 강좌 연도별 수강테이터'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의 경우 약간씩 편차는 있으나 제작하여 게시된 해당연도가 경과된 이후에는 그 수요가 상당히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자료만으로 원고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한 사정 이외에 달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한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현

판사 강성훈

판사 송혜정



별지3

청구금액표

연번	피고 저작물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원)	합계 (원)	손해발생일
		무단 전재 건수	1건당 손해액	소계(원)			
1		52	92,000	4,784,000	1,000,000	5,784,000	2008. 12. 20
2		52	92,000	4,784,000	1,000,000	5,784,000	2010. 1. 18
3		52	92,000	4,784,000	1,000,000	5,784,000	2011. 1. 19
4		90	92,000	8,280,000	1,800,000	10,080,000	2011. 1. 31
5		77	92,000	7,084,000	1,600,000	8,684,000	2012. 1. 18
6		48	92,000	4,416,000	1,000,000	5,416,000	2013. 1. 10
7		54	92,000	4,968,000	1,000,000	5,968,000	2014. 1. 15
8		49	92,000	4,508,000	1,000,000	5,508,000	2015. 1. 30
9		39	92,000	3,588,000	800,000	4,388,000	2016. 1. 29
10		23	92,000	2,116,000	1,000,000	3,116,000	2017. 1. 30
11		64	92,000	5,888,000	1,200,000	7,088,000	2011. 5. 31
12		68	92,000	6,256,000	1,400,000	7,656,000	2012. 6. 10
13		58	92,000	5,336,000	1,200,000	6,536,000	2013. 6. 15
14		41	92,000	3,772,000	800,000	4,572,000	2014. 6. 20
15		57	92,000	5,244,000	1,200,000	6,444,000	2015. 6. 30
16		20	92,000	1,840,000	400,000	2,240,000	2016. 6. 22
17		3	92,000	276,000	1,000,000	1,276,000	2017. 6. 19
18		40	85,000	3,400,000	1,000,000	4,400,000	2019. 10. 20.
19		38	85,000	3,230,000	800,000	4,030,000	2013. 11. 21
20		25	85,000	2,125,000	1,000,000	3,125,000	2018. 11. 22.
21		35	85,000	2,975,000	700,000	3,675,000	2011. 12. 2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22		40	85,000	3,400,000	800,000	4,200,000	2016. 11. 28.
23		36	85,000	3,060,000	800,000	3,860,000	2016. 12. 09
24		38	85,000	3,230,000	800,000	4,030,000	2011. 12. 22
25		51	85,000	4,335,000	1,000,000	5,335,000	2010. 06. 30
26		35	92,000	3,220,000	700,000	3,920,000	2013. 5. 27.
27		41	92,000	3,772,000	800,000	4,572,000	2014. 5. 21.
28		42	92,000	3,864,000	800,000	4,664,000	2015. 5. 8.
29		45	92,000	4,140,000	900,000	5,040,000	2016. 4. 11.
30		90	85,000	15,300,000	1,800,000	17,100,000	2011. 2. 28.
31		77	85,000	13,090,000	1,600,000	14,690,000	2012. 2. 28.
32		48	85,000	8,160,000	1,000,000	9,160,000	2013. 2. 28.
33		54	85,000	9,180,000	1,000,000	10,180,000	2014. 2. 28.
34		49	85,000	8,330,000	1,000,000	9,330,000	2015. 2. 28.
35		39	85,000	6,630,000	1,000,000	7,630,000	2016. 2. 28.
36		23	85,000	3,910,000	1,000,000	4,910,000	2017. 2. 28.
37		64	85,000	10,880,000	1,200,000	12,080,000	2011. 6. 30.
38		68	85,000	11,560,000	1,400,000	12,960,000	2012. 6. 30.
39		58	85,000	9,860,000	1,200,000	11,060,000	2013. 6. 30.
40		41	85,000	6,970,000	1,000,000	7,970,000	2014. 6. 30.
41		57	85,000	9,690,000	1,200,000	10,890,000	2015. 6. 30.
42		20	85,000	3,400,000	1,000,000	4,400,000	2016. 6. 30.
43		3	85,000	510,000	1,000,000	1,510,000	2017. 6. 30.
44		27	85,000	2,295,000	600,000	2,895,000	2011. 4. 2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45		65	85,000	5,525,000	1,400,000	6,925,000	2012. 4. 29.
46		56	85,000	4,760,000	1,200,000	5,960,000	2012. 4. 30.
47		6	85,000	510,000	200,000	710,000	2013. 4. 19.
48		48	85,000	4,080,000	1,000,000	5,080,000	2014. 4. 21.
49		45	85,000	3,825,000	1,000,000	4,825,000	2015. 3. 20.
50		38	85,000	3,230,000	800,000	4,030,000	2016. 4. 4.
51		22	85,000	1,870,000	1,000,000	2,870,000	2017. 3. 28.
52		19	85,000	1,615,000	1,000,000	2,615,000	2017. 4. 14.
53		48	85,000	4,080,000	1,000,000	5,080,000	2011. 9. 19.
54		59	85,000	5,015,000	1,200,000	6,215,000	2012. 9. 19.
55		39	85,000	3,315,000	800,000	4,115,000	2013. 8. 11.
56		32	85,000	2,720,000	600,000	3,320,000	2014. 7. 28.
57		19	85,000	1,615,000	400,000	2,015,000	2014. 7. 30.
58		49	85,000	4,165,000	1,000,000	5,165,000	2015. 8. 11.
59		21	85,000	1,785,000	400,000	2,185,000	2016. 7. 26.
60		3	85,000	255,000	1000,000	1,255,000	2017. 7. 25.
61		35	85,000	2,975,000	700,000	3,675,000	2013. 8. 19.
62		41	85,000	3,485,000	800,000	4,285,000	2014. 7. 2.
합계				293,265,000	61,000,000	354,265,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별지5

면번	피고 저작물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원)	합계(원)	침해일
		무단전재건수	1건당손해액	소계(원)			
1		52	92,000	4,784,000	500,000	5,284,000	2008. 12. 20.
2		52	92,000	4,784,000	500,000	5,284,000	2010. 01. 18.
3		52	92,000	4,784,000	500,000	5,284,000	2011. 01. 19.
4		90	92,000	8,280,000	500,000	8,780,000	2011. 01. 31.
5		77	92,000	7,084,000	500,000	7,584,000	2012. 01. 18.
6		48	92,000	4,416,000	500,000	4,916,000	2013. 01. 10.
7		54	92,000	4,968,000	500,000	5,468,000	2014. 01. 15.
8		49	92,000	4,508,000	500,000	5,008,000	2015. 01. 30.
9		39	92,000	3,588,000	500,000	4,088,000	2016. 10. 29.
10		23	92,000	2,116,000	500,000	2,616,000	2017. 01. 30.
11		64	92,000	5,888,000	500,000	6,388,000	2011. 05. 31.
12		68	92,000	6,256,000	500,000	6,756,000	2012. 06. 10.
13		58	92,000	5,336,000	500,000	5,836,000	2013. 06. 15.
14		41	92,000	3,772,000	500,000	4,272,000	2014. 06. 20.
15		57	92,000	5,244,000	500,000	5,744,000	2015. 06. 30.
16		20	92,000	1,840,000	500,000	2,340,000	2016. 06. 22.
17		3	85,000	255,000	500,000	755,000	2017. 06. 19.
18		40	85,000	3,400,000	500,000	3,900,000	2019. 10. 20.
19		38	85,000	3,230,000	500,000	3,730,000	2013. 11. 21.
20		25	85,000	2,125,000	1,000,000	3,125,000	2018. 11. 22.
21		35	85,000	2,975,000	1,000,000	3,975,000	2011. 12. 22.
22		40	85,000	3,400,000	500,000	3,900,000	2016. 11. 28.
23		36	85,000	3,060,000	1,000,000	4,060,000	2016. 12. 09.
24		38	85,000	3,230,000	500,000	3,730,000	2011. 12. 22.
25		51	85,000	4,335,000	500,000	4,835,000	2010. 06. 30.
26		35	92,000	3,220,000	500,000	3,720,000	2013. 05. 27.
27		41	92,000	3,772,000	500,000	4,272,000	2014. 05. 21.
28		42	92,000	3,864,000	500,000	4,364,000	2015. 05. 08.
29		45	92,000	4,140,000	500,000	4,640,000	2016. 04. 11.
30		90	30,000	2,700,000	300,000	3,000,000	2011. 02. 28.
31		77	30,000	2,310,000	300,000	2,610,000	2012. 02. 28.
32		48	30,000	1,440,000	300,000	1,740,000	2013. 02. 28.
33		54	30,000	1,620,000	300,000	1,920,000	2014. 02. 28.
34		49	30,000	1,470,000	300,000	1,770,000	2015. 02. 28.
35		39	30,000	1,170,000	300,000	1,470,000	2016. 02. 28.
36		23	30,000	690,000	300,000	990,000	2017. 02. 38.
37		64	30,000	1,920,000	300,000	2,220,000	2011. 06. 30.
38		68	30,000	2,040,000	300,000	2,340,000	2012. 06. 30.
39		58	30,000	1,740,000	300,000	2,040,000	2013. 06. 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4

40		41	30,000	1,230,000	300,000	1,530,000	2014. 06. 30.
41		57	30,000	1,710,000	300,000	2,010,000	2015. 06. 30.
42		20	30,000	600,000	300,000	900,000	2016. 06. 30.
43		3	30,000	90,000	300,000	390,000	2017. 06. 30.
44		27	30,000	810,000	300,000	1,110,000	2011. 04. 29.
45		65	30,000	1,950,000	300,000	2,250,000	2012. 04. 29.
46		56	30,000	1,680,000	300,000	1,980,000	2012. 04. 30.
47		6	30,000	180,000	300,000	480,000	2013. 04. 19.
48		48	30,000	1,440,000	300,000	1,740,000	2014. 04. 21.
49		45	30,000	1,350,000	300,000	1,650,000	2015. 03. 20.
50		38	30,000	1,140,000	300,000	1,440,000	2016. 04. 04.
51		22	30,000	660,000	300,000	960,000	2017. 03. 28.
52		19	30,000	570,000	300,000	870,000	2017. 04. 14.
53		48	30,000	1,440,000	300,000	1,740,000	2011. 09. 19.
54		59	30,000	1,770,000	300,000	2,070,000	2012. 09. 19.
55		39	30,000	1,170,000	300,000	1,470,000	2013. 08. 11.
56		32	30,000	960,000	300,000	1,260,000	2014. 07. 28.
57		19	30,000	570,000	300,000	870,000	2014. 07. 30.
58		49	30,000	1,470,000	300,000	1,770,000	2015. 08. 11.
59		21	30,000	630,000	300,000	930,000	2016. 07. 26.
60		3	30,000	90,000	300,000	390,000	2017. 07. 25.
61		35	30,000	1,050,000	300,000	1,350,000	2013. 08. 19.
62		41	30,000	1,230,000	300,000	1,530,000	
합계				159,544,000	25,900,000	185,444,000	